



제437회국회(임시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산림청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범위 정비〉

■ 유상범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1462호)

2026. 7.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전문위원 박 혜 진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1
III. 주요내용	2
IV. 검토의견	3
1. 개정안의 주요내용	3
2. 검토의견	9
 ※ 참고자료	
1. 개정안에 따라 산림청 또는 지방자치단체 특별사법경찰관리에게 수사권이 있는 범죄	20
2. 특별사법경찰제도 개관	36
3. 기관별·분야별 특별사법경찰 지명현황	37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유상범의원 등 13인
2. 제 안 일 : 2025. 7. 14.
3. 회 부 일 : 2025. 7. 15.

II. 제안이유

현행법은 산림 보호를 위해 각종 단속 사무를 전담하는 산림청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고 있음. 그러나,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상 특별관리임산물에 관한 수사권을 규정하지 않은 현행법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불법적 산양삼 유통·판매에 대한 미흡한 대처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음.

최근 6년간 산양삼 불법유통 단속 건수는 해마다 증가해 1,618건에 달하며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름. 문제는 단속의 후속 조치로서 계도·홍보가 94.3%로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고, 수사 의뢰·협조는 5.7%에 그치는 실정임. 이에 산양삼 위조·혼입 등이 적발되더라도 솜방망이 조치에 그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를 입법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또한, 산림기술자 및 산림사업체의 명의 대여 등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례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이들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현행법상 단속 권한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법 집행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산림청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산양삼 품질관리와 산림기술자 관련 등록·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지명할 수 있도록 하고, 이들이 수행할 직무범위에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및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를 포함시켜 단속의 실효성과 현장 집행력을 제고하려는 것임.

Ⅲ. 주요내용

가. 산림청과 그 소속 기관,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 소속 사법경찰관리의 지명범위를 정비함(안 제4조, 제5조제5호부터 제7호까지).

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범위에 특별관리임산물, 산림기술자 자격증 및 산림기술용역업·산림사업시행업 등록증에 관한 범죄를 추가하고 관련 산림 관계 법률을 명확히 하도록 조문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안 제6조제5호).

IV. 검토의견

1. 개정안의 주요내용

- 개정안은 산림 보호를 위한 단속 사무를 전담할 자로서 특별사법경찰관리가 되는 자를 명확히 하고(안 제4조), 산림청과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중 사법경찰관리 지명 대상을 현행 “산림 보호·경영 사무, 목재제품 규격·품질 단속 사무 및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에 관한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에서 “산림 관계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으로 확대하며(안 제5조제5호부터 제7호까지), 산림청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범위와 수사관할에 해당하는 법률을 명시하고,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특별관리 임산물에 관한 범죄,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산림기술자 및 산림기술용역업·산림사업시행업에 관한 범죄를 추가하는 내용임(안 제6조제5호가목부터 라목까지).

현행	개정안
제4조(산림 보호에 종사하는 공무원) 산림청과 그 소속 기관(산림항공관리소는 제외한다),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제4조(산림 보호에 종사하는 공무원) ----- ----- -----

현행	개정안
특별자치도(이하 “특별시·광역시·도”라 한다)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산림 보호를 위한 단속 사무를 전담할 자로서 그 소속 기관의 장이 관할 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 보고한 <u>임업주사 및 임업주사보는</u>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u>임업서기 및 임업서기보는</u>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수행한다.	----- ----- ----- ----- ----- -----6급 · 7급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은-----8급·9급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은-----.
제5조(검사장의 지명에 의한 사법경찰관리)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자로서 그 소속 관서의 장의 제청에 의하여 그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검사장이 지명한 자 중 7급 이상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및 소방위 이상의 소방공무원은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8급·9급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및 소방장 이하의 소방공무원은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수행한다.	제5조(검사장의 지명에 의한 사법경찰관리) ----- ----- ----- ----- ----- ----- ----- ----- ----- ----- -----.

현행	개정안
1. ~ 4의2. (생략)	1. ~ 4의2. (현행과 같음)
5. 산림청과 그 소속 기관(산림항공관리소는 <u>제외한다</u>)에 근무하며 산림 <u>보호·경영 사무, 목재제품 규격·품질 단속 사무 및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에 관한 단속 사무</u> 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u>국가공무원</u>	5. ----- <u>제외한다</u>), 특별 시·광역시·도 및 시·군· 구----- <u>관계</u> ----- ----- ----- ----- ---- <u>국가공무원 및 지방공 무원</u>
6. 특별시·광역시·도에 근무하며 산림 보호와 국유림 경영 사무, 목재제품 규격·품질 단속 사무 및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에 관한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u>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u>	<삭 제>
7. 시·군·구 또는 읍·면에 근무하며 산림 보호 사무, 목재제품 규격·품질 단속 사무 및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에 관한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6급부터 9급까지의 <u>국가공무원 및 4급부터 9급까지의 지방공</u>	<삭 제>

현행	개정안
<u>무원</u> 8. ~ 53. (생략) 제6조(직무범위와 수사 관할) 제4조와 제5조에 따라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할 자의 직무범위와 수사 관할은 다음 각 호에 규정된 범죄로 한정한다. 1. ~ 4의2. (생략) 5. 제4조와 <u>제5조제5호부터 제7호까지</u> 및 제13호에 규정된 사람의 경우에는 <u>다음</u>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범죄 가. <u>산림 보호·경영 사무에 종사하는 사람: 소속 관서 소관 임야에서 발생하는 산림, 그 임산물과 수렵에 관한 범죄</u>	8. ~ 53. (현행과 같음) 제6조(직무범위와 수사 관할) - ----- ----- ----- -----. 1. ~ 4의2. (현행과 같음) 5. -----<u>제5조제5호</u>----- ----- -----<u>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다음</u>----- --- 가. 「<u>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u>」, 「<u>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u>」, 「<u>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u>」, 「<u>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u>」, 「<u>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u>」, 「<u>사방사업법</u>」, 「<u>산림교육의 활성화에</u>

현행	개정안
나. <u>목재제품 규격·품질 단속 사무 및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에 관한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사람: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u> <신설>	<u>관한 법률」,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산림보호법」,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재난방지법」, 「산지관리법」,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소나무재선충병방제 특별법」,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산림 보호·경영 등에 관한 범죄</u> 나. 「<u>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u>」에 규정된 목재제품 및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에 관한 범죄 다. 「<u>임업 및 산촌 진흥촉</u>

현행	개정안
<u><신 설></u> 6. ~ 50. (생략)	<u>진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특별관리임산물에 관한 범죄</u> <u>라.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산림기술자 및 산림기술용역업·산림사업시행업에 관한 범죄</u> 6. ~ 50. (현행과 같음)

2. 검토의견

가. 산림청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운영 현황

□ 현행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이하 “사법경찰직무법”)은 산림청과 그 소속 기관(산림항공관리소 제외),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및 시·군·구 특별사법경찰관리에게 산림 보호를 위한 단속 사무(제4조), 소속 관서 소관 임야에서 발생하는 산림, 그 임산물과 수렵에 관한 범죄 및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 등(제6조)에 대한 수사권을 부여하고 있음¹⁾.

○ 이에 따라 현재(2025년 기준) 각 지역의 산림청 및 지방자치단체는 총 1,252명의 특별사법경찰을 운영하고 있음.

1) 사법경찰직무법

제4조(산림 보호에 종사하는 공무원) 산림청과 그 소속 기관(산림항공관리소는 제외한다),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특별시·광역시·도”라 한다)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산림 보호를 위한 단속 사무를 전담할 자로서 그 소속 기관의 장이 관할 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 보고한 임업주사 및 임업주사보(이하 “임업주사”라 한다)의 직무를, 임업서기 및 임업서기보(이하 “임업서기”라 한다)의 직무를 수행한다.

제5조(검사장의 지명에 의한 사법경찰관리)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자로서 그 소속 관서의 장의 제청에 의하여 그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검사장이 지명한 자 중 7급 이상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및 소방위 이상의 소방공무원은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8급·9급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및 소방장 이하의 소방공무원은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수행한다.

5. 산림청과 그 소속 기관(산림항공관리소는 제외한다)에 근무하며 산림 보호·경영 사무, 목재제품 규격·품질 단속 사무 및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에 관한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6. 특별시·광역시·도에 근무하며 산림 보호와 국유림 경영 사무, 목재제품 규격·품질 단속 사무 및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에 관한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7. 시·군·구 또는 읍·면에 근무하며 산림 보호 사무, 목재제품 규격·품질 단속 사무 및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에 관한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6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4급부터 9급까지의 지방공무원

제6조(직무범위와 수사 관할) 제4조와 제5조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의 직무범위와 수사 관할은 다음 각 호에 규정된 범죄로 한정한다.

5. 제4조와제5조 제5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3호에 규정된 사람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범죄
가. 산림 보호·경영 사무에 종사하는 사람: 소속 관서 소관 임야에서 발생하는 산림, 그 임산물과 수렵에 관한 범죄

나. 목재제품 규격·품질 단속 사무 및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에 관한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사람: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

<2025년 산림청 특별사법경찰 인원수 및 2024년도 검거실적 >

(단위 : 명, 건수)

연번	기 관	인 원			검거실적(2024년)
		계	특별사법경찰관	특별사법경찰리	
합계	-	1,252	875	377	2,190
산림청 소계		179	106	73	359
1	본청	3	3	0	0
2	북부지방산림청	33	17	16	121
3	동부지방산림청	39	20	19	98
4	남부지방산림청	34	22	12	98
5	서부지방산림청	27	16	11	15
6	중부지방산림청	29	18	11	27
7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5	3	2	0
8	국립산림과학원	7	6	1	0
9	국립수목원	2	1	1	0
지자체 소계		1,073	769	304	1,831
10	서울	0	0	0	0
11	부산	39	23	16	16
12	대구	22	15	7	25
13	인천	8	4	4	22
14	광주	17	11	6	1
15	대전	12	9	3	0
16	울산	19	16	3	12
17	세종	4	4	0	18
18	경기	43	32	11	465
19	강원	215	156	59	129
20	충북	144	79	65	156
21	충남	81	59	22	250
22	전북	102	73	29	135
23	전남	72	54	18	138
24	경북	187	149	38	320
25	경남	88	69	19	96
26	제주	20	16	4	48

자료: 산림청

나. 검토의견

(1) 산림 보호 단속 관련

□ 현행 사법경찰직무법 제4조²⁾에 따르면 산림 보호를 위한 단속 사무를 전담하는 특별사법경찰관리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이 관할 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 보고한 임업주사, 임업주사보, 임업서기 및 임업서기보임.

○ 현행법상 산림 보호를 위한 단속 사무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산림청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사방사업법」,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산림보호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재난방지법」, 「산지관리법」,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의 위반행위라고 설명하고 있음.

○ 안 제4조는 소속 기관의 장이 산림 보호를 위한 단속 사무를 전담할 자로서 관할 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 보고하여 특별사법경찰

2) 사법경찰직무법

제4조(산림 보호에 종사하는 공무원) 산림청과 그 소속 기관(산림항공관리소는 제외한다),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특별시·광역시·도”라 한다)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산림 보호를 위한 단속 사무를 전담할 자로서 그 소속 기관의 장이 관할 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 보고한 임업주사 및 임업주사보·임업서기보·임업서기 등의 직무를 수행한다.

관리의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 “임업주사 및 임업주사보”를 “6급 · 7급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으로, “임업서기 및 임업서기보”를 “8급 · 9급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으로 수정하려는 것임.

-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임업 직렬에 한정하던 특별사법경찰관리를 특정 직렬에 한정하지 않고 “6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 및 지방공무원”으로 그 범위가 확대되는데, 이에 대해 산림청은 현재도 실무상 임업·녹지직렬 외에도 행정직렬 등의 공무원도 산림보호 단속 사무를 전담하고 있어 이를 반영하려는 것이라는 설명임.

- 따라서 특정 직렬에게만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하게 할 것인지 직렬의 구분없이 해당 계급의 모든 공무원에게 확대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이며, 대상을 확대할지에 대하여는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 참고로, 2007년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대통령령 제19822호, 2007. 1. 5.)으로 지방공무원의 직군·직렬분류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임업” 직렬이 “녹지”로 개편된 바 있고, “지방임업주사”, “지방임업주사보”, “지방임업서기” 및 “지방임업서기보”는 각각 “지방녹지주사”, “지방녹지주사보”, “지방녹지서기”, “지방녹지서기보”로 직렬명칭이 변경되었음.

구분	국가공무원 임업직렬 유지									지방공무원 임업직렬 → 녹지직렬								
지방 공무원 직렬 변경	국가공무원(「공무원 임용령」)									지방공무원(「지방공무원 임용령」)								
	직군	직렬	직류	계급						직군	직렬	직류	계급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기술	임업	산림조정							2.기술	녹지	산림자원						
			산림자원									산림보호	지방	지방	지방	지방	지방	지방
			산림보호	부이사관	기술	임업	임업	임업	임업			산림이용	관리관	이사관	부이사관	기술	지방	지방
			산림이용		서기관	사무관	주사	주사보	서기			조경			관	서기관	사무관	주사
			산림환경														주사보	지서기
																	서기보	

(2) 산림 보호와 국유림 경영 사무, 목재제품 규격·품질 단속 사무 및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에 관한 단속 사무 관련

1) 사법경찰관리의 지명 범위

- 현행 사법경찰직무법 제5조제5호부터 제7호³⁾까지는 산림청 및 지방자치단체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로서 검사장의 지명 대상이 되는 공무원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음.

3) 사법경찰직무법

제5조(검사장의 지명에 의한 사법경찰관리)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자로서 그 소속 관서의 장의 제청에 의하여 그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검사장이 지명한 자 중 7급 이상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및 소방위 이상의 소방공무원은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8급·9급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및 소방장 이하의 소방공무원은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수행한다.

5. 산림청과 그 소속 기관(산림항공관리소는 제외한다)에 근무하며 산림 보호·경영 사무, 목재제품 규격·품질 단속 사무 및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에 관한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6. 특별시·광역시·도에 근무하며 산림 보호와 국유림 경영 사무, 목재제품 규격·품질 단속 사무 및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에 관한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7. 시·군·구 또는 읍·면에 근무하며 산림 보호 사무, 목재제품 규격·품질 단속 사무 및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에 관한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6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4급부터 9급까지의 지방공무원

<현행 산림청 및 지방자치단체 사법경찰관리의 지명 범위>

소속	담당사무	직급범위
산림청	산림 보호·경영 사무, 목재제품 규격·품질 단속 사무 및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에 관한 단속 사무	4급부터 9급까지의 <u>국가공무원</u>
시도	산림 보호와 국유림 경영 사무, 목재제품 규격·품질 단속 사무 및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에 관한 단속 사무	4급부터 9급까지의 <u>국가공무원</u> 또는 <u>지방공무원</u>
시군구	산림 보호 사무, 목재제품 규격·품질 단속 사무 및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에 관한 단속 사무	6급부터 9급까지의 <u>국가공무원</u> 및 4급부터 9급까지의 <u>지방공무원</u>

□ 현행법은 소속 기관에 따라 공무원의 담당사무 및 직급을 달리 정하고 있으나 개정안 제5조는 담당사무를 “산림 관계” 단속 사무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공무원의 직급도 4급부터 9급까지로 일괄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 산림청은 ① 각 산림별 관할 행정청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확⁴⁾하고, ② 산림 보호·경영 등의 사무를 담당하는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의 업무가 다르지 않으며, ③ 읍·면의 지방공무원에게는 사법경찰권을 부여하고 있지 않고, ④ 지방자치단체에서

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산림의 구분) 산림은 그 소유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국유림(國有林): 국가가 소유하는 산림
2. 공유림(公有林): 지방자치단체나 그 밖의 공공단체가 소유하는 산림
3. 사유림(私有林): 제1호와 제2호 외의 산림

제5조(산림의 관할 행정청) 산림별 관할 행정청은 다음과 같다.

1. 산림청 소관 국유림: 산림청장 또는 그 소속 기관의 장
2. 제1호 외의 국유림·공유림 및 사유림: 산림 소재지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근무하면서 단속사무를 담당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해당 조문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 다만, 개정안 제5조제5호와 같이 단속 사무를 “산림 관계” 단속 사무로 포괄하는 경우 현행법에 비하여 검사장이 지명하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의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될 우려가 있으므로 어떤 사무에 종사하는 자에게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할지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 참고로, 개정안 제6조는 직무범위 및 수사관할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근거 법률을 명시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조문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2)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범위와 수사관할 관련

□ 현행 사법경찰직무법 제6조제5호⁵⁾는 제4조와 제5조제5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3호⁶⁾에 규정된 산림청, 지방자치단체, 국립학교 소속

5) 사법경찰직무법

제6조(직무범위와 수사 관할) 제4조와 제5조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의 직무범위와 수사 관할은 다음 각 호에 규정된 범죄로 한정한다.

5. 제4조와 제5조제5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3호에 규정된 사람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범죄

가. 산림 보호·경영 사무에 종사하는 사람: 소속 관서 소관 임야에서 발생하는 산림, 그 임산물과 수렵에 관한 범죄

나. 목재제품 규격·품질 단속 사무 및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에 관한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사람: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범위와 수사관할을 규정하고 있으나, 그 직무범위에 해당하는 근거 법률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뿐임.

구분	사법경찰직무법 제6조제5호	
	가목	나목
특별사법경찰관리	산림 보호·경영 사무 종사자	목재제품 규격·품질 단속 사무 및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에 관한 단속 사무 종사자
직무범위	소속 관서 소관 임야에서 발생하는 산림, 그 임산물과 수렵에 관한 범죄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
수사관할	소속 관서 소관 임야	소속 관서 관할 구역

□ 이에 안 제6조제5호는 산림청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범위와 수사관할에 해당하는 법률을 명시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입법 조치로 보임.

○ 다만, 현행 사법경찰직무법 제6조제5호 가목 및 나목은 “산림 보

6) 사법경찰직무법

제5조(검사장의 지명에 의한 사법경찰관리)다음 각 호에 규정된 자로서 그 소속 관서의 장의 제청에 의하여 그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검사장이 지명한 자 중 7급 이상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및 소방위 이상의 소방공무원은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8급·9급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및 소방장 이하의 소방공무원은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5. 산림청과 그 소속 기관(산림항공관리소는 제외한다)에 근무하며 산림 보호·경영 사무, 목재제품 규격·품질 단속 사무 및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에 관한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6. 특별시·광역시·도에 근무하며 산림 보호와 국유림 경영 사무, 목재제품 규격·품질 단속 사무 및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에 관한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7. 시·군·구 또는 읍·면에 근무하며 산림 보호 사무, 목재제품 규격·품질 단속 사무 및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에 관한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6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4급부터 9급까지의 지방공무원

13. 국립학교에 근무하며 그 학교의 실습림 및 관리림의 보호 사무에 종사하는 6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호·경영 사무에 종사하는 사람”과 “목재제품 규격·품질 단속 사무 및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에 관한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구분하여 직무범위와 수사관할을 규정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개정안은 종사하는 사무에 관계없이 포괄적으로 직무범위를 규정하고 있음.

- 특별사법경찰권은 일반사법경찰의 수사권이 미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 한정하여 보충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는 점을 고려하여 현행법과 같이 해당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자에 한하여 해당 업무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3) 특별관리임산물, 산림기술자 및 산림기술용역업·산림사업시행업에 관한 범죄 등 추가

- 현재 산림청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상 특별관리임산물 생산 신고, 유통·판매, 품질 검사, 폐기 반송, 품질표시 등의 의무 위반 단속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상 산림기술자의 양성 및 자격증 발급, 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 산림기술용역업·산림사업시행업의 실적 관리 등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다만, 현행 사법경찰직무법은 산림청 및 지방자치단체 특별사법

경찰관리의 직무범위를 “산림보호·경영 및 목재제품 등”에 관한 범죄로만 한정하고 있어 특별관리임산물 생산 신고, 유통·판매, 품질검사, 품질표시 등 위반 범죄 및 산림기술자의 미등록 영업행위, 자격증 대여 등 금지행위 위반에 대해서는 수사할 수 없음.

□ 이에 개정안 제6조는 다목과 라목을 신설하여 산림청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특별관리임산물에 관한 범죄 및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산림기술자 및 산림기술용역업·산림사업시행업에 관한 범죄에 대하여도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개정안과 같이 산림청 및 지방자치단체 특별사법경찰관리에게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특별관리임산물 생산 신고, 유통·판매, 품질검사, 폐기 반송, 품질표시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범죄,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산림기술자 자격증을 대여하거나 자격증을 빌려 사업을 수행한 범죄 등에 대한 수사권을 부여할 경우 단속과 수사의 연계성을 통해 효율적인 수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임.

□ 다만, 특별사법경찰은 수사의 전문가가 아닌 행정공무원 등에게 강제수사 권한이 부여되는 것이므로 일반사법경찰의 수사권이 미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 한정하여 보충적으로 운영

되어야 하는바, 관련 범죄 수사에 있어 일반사법경찰이 아닌 특별
사법경찰이 수사하여야 할 특수성 또는 불가피성이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측면이 있음.

문 의 처
02)6788-5059

[참고자료 1] 개정안에 따라 산림청 또는 지방자치단체 특별사법경찰관리에게 수사권이 있는 범죄

제4조(산림 보호에 종사하는 공무원) 산림 보호를 위한 단속 사무 관련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2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건물 그 밖에 영구시설물을 설치한 자
2. 제24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대부계약서 또는 허가조건에 명시된 산물 외의 산물을 취득한 자
3.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국유림의 대부등에 관한 권리를 양도하거나 명의변경을 한 자
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2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은 자
5. 제2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위반하여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행위를 한 자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벌칙) ① 도시숲등과 그 산물을 절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2조제3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가로수의 심고 가꾸기·옮겨심기·제거 또는 가지치기 등을 한 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도시숲등과 그 부대시설을 훼손한 자
3. 도시숲등에 무단으로 장애물 또는 공작물(工作物)을 설치·방치하거나 점유한 자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2조(벌칙) ①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생태적 산지전용지구에서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산지전용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생태적 산지전용지구에서 실시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시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아 산지전용을 한 자
2. 제18조를 위반하여 생태적 산지전용지구에서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형질변경, 입목벌채, 시설의 높이·넓이 등 규모나 밀도·배치의 변경, 그 밖에 지형·토양·식생 또는 경관의 변화를 수반하는 행위를 한 자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벌칙) ①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핵심구역에서 허용되지 아니하는 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7조제2항을 위반하여 완충구역에서 허용되지 아니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방사업법」

제27조(벌칙) 제14조제1항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8조(벌칙) 제13조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35조(벌칙) ① 지정산림문화자산에 불을 놓아 태워 없앤 자는 7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지정산림문화자산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지정산림문화자산을 손상,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가치를 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7.>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과실로 인하여 지정산림문화자산을 불에 타게 한 자

2. 제23조의5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하여 숲길을 훼손하거나 다른 사람 소유의 건조물·농작물,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자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산림문화자산에 대한 보호·관리 시설의 설치를 방해하거나 재해·병해충 방지 등을 위한 관리행위를 방해한 자

2. 지정산림문화자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한 표지 등을 손상, 이동, 제거, 그 밖의 방법으로 식별할 수 없게 한 자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산림치유지도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4. 제11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산림치유지도사의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그 자격증을 대여한 사람

5. 제11조의2제7항을 위반하여 산림치유지도사의 명의를 사용하거나 그 자격증을 대여받은 사람 또는 명의를 사용이나 자격증의 대여를 알선한 사람

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1조의4제1항에 따라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은 자

「산림보호법」

제53조(벌칙) ① 산림보호구역 또는 보호수에 불을 지른 자는 7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54조(벌칙) ① 보호수를 절취하거나 산림보호구역에서 그 산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

한다.

1.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입목·죽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채취, 입목·죽 또는 임산물을 손상하거나 말라 죽게 하는 행위, 가축의 방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를 한 자
2. 제9조제2항제1호에 따른 허가 없이 입목·죽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채취, 가축의 방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를 한 자
3. 제18조의3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보호종을 벌채·굴취·채취·손상 또는 말라 죽게 하거나 그 자생지를 훼손한 자
4. 제45조의10을 위반하여 산사태취약지역에서 사방시설을 훼손하거나 사방시설을 설치·관리하는 것을 거부 또는 방해한 자
- ③ 제13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보호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제24조제3항제2호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1조의4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나무의사 등의 자격취득을 하지 아니하고 수목진료를 한 자
2. 제21조의4제4항을 위반하여 동시에 두 개 이상의 나무병원에 취업한 나무의사 등
3. 제21조의4제5항을 위반하여 나무의사 등의 명칭이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5. 제21조의6제6항에 따른 자격정지기간에 수목진료를 한 나무의사 등
6. 제21조의9제4항을 위반하여 나무병원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수목진료를 한 자
7. 제21조의9제5항을 위반하여 나무병원의 등록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준 자
- 7의2. 제21조의9제6항을 위반하여 나무병원의 명칭이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제54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21조의4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나무의사 등의 자격을 취득한 자
- 1의2. 제21조의6제4항을 위반하여 나무의사 등의 자격증을 빌리거나 빌려주거나 이를 알선한 자
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21조의7제1항에 따라 나무의사 등의 양성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
3.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21조의9제1항에 따라 나무병원을 등록한 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벌칙) ① 채종림·수형목·시험림에 방화(放火)한 사람은 7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73조(벌칙) ① 산림에서 그 산물(조립된 묘목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절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의 죄를 저지른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 채종림이나 시험림에서 그 산물을 절취하거나 수형목을 절취한 경우
2. 원뿌리를 채취한 경우
3. 장물(贓物)을 운반하기 위하여 차량이나 선박을 사용하거나 운반·조재(벌채한 나무를 마름

질하여 재목을 만듦)의 설비를 한 경우

4. 입목이나 대나무를 벌채하거나 산림의 산물을 굴취 또는 채취하는 권리를 행사하는 기회를 이용하여 절취한 경우

5. 야간에 절취한 경우

6.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저지른 경우

제74조(벌칙) ① 제19조제5항을 위반하여 채종림등에서 입목·대나무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채취, 가축의 방목, 그 밖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36조제1항을 위반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 없이 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입목벌채등을 한 자

3. 정당한 사유 없이 산림 안에서 입목·대나무를 손상하거나 말라죽게 한 자

5. 입목·대나무, 목재 또는 원뿌리에 표시한 기호나 도장을 변경하거나 지운 자

6.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산림에 인공구조물을 설치한 자

「산림재난방지법」

제76조(벌칙) ①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사람은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자기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2항의 경우 불이 타인의 산림에까지 번져 피해를 입혔을 때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 과실로 인하여 타인 또는 자신의 산림을 불에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린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77조(벌칙) ① 제24조를 위반하여 산사태취약지역에서 사방시설을 훼손하거나 사방시설을 설치·관리하는 것을 거부 또는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5조제3항에 따른 안전조치 명령을 위반한 자

2. 제38조제4항을 위반하여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안전조치를 방해한 자

제78조(벌칙) ①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이동 제한이나 사용 금지 명령을 위반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3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2. 제45조제3항을 위반하여 설계하거나 감리한 자

「산지관리법」

제53조(벌칙) 보전산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보전산지 외의 산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併科)할 수 있다.

1. 제14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산지전용을 한 자
2. 제15조의2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일시사용을 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아 산지일시사용을 한 자
- 2의2. 제16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의 목적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허가·승인 등의 행정처분이 필요한 경우 그 행정처분을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한 자
3. 제25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토석채취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석채취를 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토석채취허가를 받아 토석채취를 한 자
4. 제28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연석을 채취한 자
5. 제35조제1항에 따라 매입하거나 무상양여받지 아니하고 국유림의 산지에서 토석채취를 한 자

제54조(벌칙) 보전산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보전산지 외의 산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4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허가를 받아 산지전용을 한 자
2. 제15조의2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일시사용을 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허가를 받아 산지일시사용을 한 자
3. 제19조제2항제1호 후단을 위반하여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내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하거나 산지일시사용을 한 자
- 3의2. 제20조제2항에 따른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 중지명령을 위반한 자
4. 제25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석채취를 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허가를 받아 토석채취를 한 자
5. 제25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사용인과 고용인을 포함한다) 중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토석 외의 토석을 반입한 자
6. 제30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사용인과 고용인을 포함한다) 중 신고를 한 토석 외의 토석을 반입한 자
7. 제31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 또는 채석의 중지명령을 위반한 자
8. 제31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 또는 채석의 중지명령 기간 동안 토석을 반입한 자

제55조(벌칙) 보전산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보전산지 외의 산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5조제1항 전단에 따라 산지전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산지전용신고를 하고 산지전용한 자
2. 제15조의2제4항 전단에 따라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산지일시사용을 하거나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고 산지일시사용을 한 자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8조의2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산지전용타당성조사를 한 자 또는 그 조사결과를 허위로 통보하거나 변조하여 제출한 자
 4.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된 토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
 5. 제25조제2항 전단을 위반하여 토사채취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토사를 채취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토사채취신고를 하고 토사채취를 한 자
 6. 제30조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채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채석단지에서 채석을 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채석신고를 하고 채석단지 안에서 채석을 한 자
 7. 제37조제7항 각 호에 따른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8. 제39조제4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이 포함된 토석 또는 폐기물로 산지를 복구한 자
 9. 제40조의2제1항(제44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2항을 위반하여 감리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감리한 자
 10. 제44조제1항에 따른 시설물의 철거명령이나 형질변경한 산지의 복구명령을 위반한 자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석재채취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석재채취업을 영위한 자
2. 제9조제5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명칭을 사용하여 석재채취업등을 경영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을 빌려준 자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4조제1항에 따른 우수사업자 인증을 받은 자
4. 제14조제4항을 위반하여 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5.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제20조를 위반하여 거짓 표시 등을 한 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7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의3제3항을 위반한 부실 설계·감리로 재선충병의 피해 확산 원인을 제공한 자
2. 제8조의4제2항을 위반한 부실 시공·사업으로 재선충병의 피해 확산 원인을 제공한 자
3.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반출금지구역에서 소나무류를 이동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7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회피한 자
2. 제8조제1항에 따른 방제조치 명령을 위반한 자
3. 제10조제3항 전단을 위반하여 감염목등을 판매·이용하거나 감염목등을 보유·발견하고 신고하지 아니한 자

③ 제10조의2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벌칙) 제6조의2제6항(제18조의2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항 각 호의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조 제5호 가목 및 나목 관련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2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건물 그 밖에 영구시설물을 설치한 자
2. 제24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대부계약서 또는 허가조건에 명시된 산물 외의 산물을 취득한 자
3.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국유림의 대부등에 관한 권리를 양도하거나 명의변경을 한 자
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2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은 자
5. 제2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위반하여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행위를 한 자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벌칙) ① 도시숲등과 그 산물을 절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2조제3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가로수의 심고 가꾸기·옮겨심기·제거 또는 가지치기 등을 한 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도시숲등과 그 부대시설을 훼손한 자
3. 도시숲등에 무단으로 장애물 또는 공작물(工作物)을 설치·방치하거나 점유한 자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45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17조제4항에 따른 안전성 위해 목재제품의 생산 및 판매 제한 또는 폐기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20조제2항에 따른 규격·품질검사를 받지 아니한 목재제품을 판매·유통하거나 통관한 자 또는 규격·품질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목재제품을 판매·유통하거나 통관한 자
4. 제19조의3제3항, 제20조제5항에 따른 판매정지·반송 또는 폐기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5. 제20조제6항에 따른 규격·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한 목재제품을 통관하거나 판매·유통한 자
6. 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규격·품질검사를 행한 자
8.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규격·품질검사를 위한 수거·조사·검사 또는 열람을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9. 제22조제4항에 따른 표시의 변경·사용정지 처분 또는 판매정지처분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0.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목재생산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목재생산업을 경영한 자

11. 제36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수집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수집한 자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의2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목재교육전문가 양성 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
 2. 제10조의4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목재교육프로그램의 인증을 받은 자
 3. 제10조의5제4항제1호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목재교육전문가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4. 제10조의5제5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목재교육전문가의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그 자격증을 대여한 사람
 5. 제10조의5제6항을 위반하여 목재교육전문가의 명의를 사용하거나 그 자격증을 대여받은 사람 또는 명의의 사용이나 자격증의 대여를 알선한 사람
- 5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9조제4항에 따른 국산목재 또는 국산목재제품 확인을 받은 자
- 6의2. 제20조제6항에 따른 규격·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한 목재제품을 보관한 자
7. 제20조제9항에 따른 규격·품질표시 기준을 위반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
8. 제24조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명칭을 사용하여 목재생산을 경영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을 빌려준 자
9. 제26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0. 제32조제4항 및 제9항을 위반한 자
1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6조의3제1항에 따라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수집 허가를 받은 자
1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6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증명서를 발급받은 자
13. 제36조의4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증명서를 위조하거나 위조된 증명서를 유통한 자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2조(벌칙) ①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생태적 산지전용지구에서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산지전용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생태적 산지전용지구에서 실시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시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아 산지전용을 한 자
2. 제18조를 위반하여 생태적 산지전용지구에서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형질변경, 입목벌채, 시설의 높이·넓이 등 규모나 밀도·배치의 변경, 그 밖에 지형·토양·식생 또는 경관의 변화를 수반하는 행위를 한 자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벌칙) ①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핵심구역에서 허용되지 아니하는 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7조제2항을 위반하여 완충구역에서 허용되지 아니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방사업법」

제27조(벌칙) 제14조제1항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8조(벌칙) 제13조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7조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
2.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산림교육프로그램의 인증을 받은 자
3.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산림교육전문가의 자격을 취득한 자
4. 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산림교육전문가의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그 자격증을 대여한 자
5. 제10조제4항을 위반하여 산림교육전문가의 명의를 사용하거나 그 자격증을 대여받은 자 또는 명의를 사용이나 자격증의 대여를 알선한 자
6.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등록하지 아니하고 유아숲체험원을 조성·운영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자
7. 제13조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산림교육센터의 지정을 받은 자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35조(벌칙) ① 지정산림문화자산에 불을 놓아 태워 없앤 자는 7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지정산림문화자산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지정산림문화자산을 손상,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가치를 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7.>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과실로 인하여 지정산림문화자산을 불에 타게 한 자
2. 제23조의5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하여 숲길을 훼손하거나 다른 사람 소유의 건조물·농작물,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자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산림문화자산에 대한 보호·관리 시설의 설치를 방해하거나 재해·병해충 방지 등을 위한 관리행위를 방해한 자
 2. 지정산림문화자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한 표지 등을 손상, 이동, 제거, 그 밖의 방법으로 식별할 수 없게 한 자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산림치유지도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4. 제11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산림치유지도사의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그 자격증을 대여한 사람
 5. 제11조의2제7항을 위반하여 산림치유지도사의 명의를 사용하거나 그 자격증을 대여받은 사람 또는 명의를 사용이나 자격증의 대여를 알선한 사람
 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1조의4제1항에 따라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은 자⑤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산림문화자산에 대한 보호·관리 시설의 설치를 방해하거나 재해·병해충 방지 등을 위한 관리행위를 방해한 자
 2. 지정산림문화자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한 표지 등을 손상, 이동, 제거, 그 밖의 방법으로 식별할 수 없게 한 자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산림치유지도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4. 제11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산림치유지도사의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그 자격증을 대여한 사람
 5. 제11조의2제7항을 위반하여 산림치유지도사의 명의를 사용하거나 그 자격증을 대여받은 사람 또는 명의를 사용이나 자격증의 대여를 알선한 사람
 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1조의4제1항에 따라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은 자

「산림보호법」

제53조(벌칙) ① 산림보호구역 또는 보호수에 불을 지른 자는 7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54조(벌칙) ① 보호수를 절취하거나 산림보호구역에서 그 산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입목·죽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채취, 입목·죽 또는 임산물을 손상하거나 말라 죽게 하는 행위, 가축의 방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를 한 자
2. 제9조제2항제1호에 따른 허가 없이 입목·죽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채취, 가축의 방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를 한 자

3. 제18조의3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보호종을 벌채·굴취·채취·손상 또는 말라 죽게 하거나 그 자생지를 훼손한 자
4. 제45조의10을 위반하여 산사태취약지역에서 사방시설을 훼손하거나 사방시설을 설치·관리하는 것을 거부 또는 방해한 자
- ③ 제13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보호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④ 제24조제3항제2호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1조의4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나무의사 등의 자격취득을 하지 아니하고 수목진료를 한 자
 2. 제21조의4제4항을 위반하여 동시에 두 개 이상의 나무병원에 취업한 나무의사 등
 3. 제21조의4제5항을 위반하여 나무의사 등의 명칭이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5. 제21조의6제6항에 따른 자격정지기간에 수목진료를 한 나무의사 등
 6. 제21조의9제4항을 위반하여 나무병원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수목진료를 한 자
 7. 제21조의9제5항을 위반하여 나무병원의 등록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준 자
- 7의2. 제21조의9제6항을 위반하여 나무병원의 명칭이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 제54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21조의4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나무의사 등의 자격을 취득한 자
 - 1의2. 제21조의6제4항을 위반하여 나무의사 등의 자격증을 빌리거나 빌려주거나 이를 알선한 자
 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21조의7제1항에 따라 나무의사 등의 양성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
 3.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21조의9제1항에 따라 나무병원을 등록한 자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 제6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산림복지단지를 조성·운영한 자
 2. 제35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없이 산림복지단지를 조성·운영한 자
 3. 제48조에 따른 준공검사 없이 산림복지단지를 운영한 자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5조제1항을 위반하여 실시계획의 변경승인 없이 산림복지단지를 변경조성·운영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시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아 산림복지단지를 변경조성·운영한 자
 2. 제45조를 위반하여 분양 또는 임대를 조건으로 회원을 모집한 자
 3. 제48조제5항에 따른 보완 시공 등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한 자
 2.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산림복지전문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산림복지전문업을 영위한 자

3.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산림복지전문업의 등록증을 양도 또는 대여한 자
4. 제46조를 위반하여 산림복지단지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5. 제47조제2항에 따른 공사의 중지, 인공구조물의 개축·이전,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6. 제63조를 위반하여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벌칙) ① 채종림·수형목·시험림에 방화(放火)한 사람은 7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73조(벌칙) ① 산림에서 그 산물(조립된 묘목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절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의 죄를 저지른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 채종림이나 시험림에서 그 산물을 절취하거나 수형목을 절취한 경우
2. 원뿌리를 채취한 경우
3. 장물(贓物)을 운반하기 위하여 차량이나 선박을 사용하거나 운반·조재(벌채한 나무를 마름질하여 재목을 만듦)의 설비를 한 경우
4. 입목이나 대나무를 벌채하거나 산림의 산물을 굴취 또는 채취하는 권리를 행사하는 기회를 이용하여 절취한 경우
5. 야간에 절취한 경우
6.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저지른 경우

제74조(벌칙) ① 제19조제5항을 위반하여 채종림등에서 입목·대나무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채취, 가축의 방목, 그 밖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36조제1항을 위반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 없이 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입목벌채등을 한 자
3. 정당한 사유 없이 산림 안에서 입목·대나무를 손상하거나 말라죽게 한 자
5. 입목·대나무, 목재 또는 원뿌리에 표시한 기호나 도장을 변경하거나 지운 자
6.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산림에 인공구조물을 설치한 자

「산림재난방지법」

제76조(벌칙) ①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사람은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자기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2항의 경우 불이 타인의 산림에까지 번져 피해를 입혔을 때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 과실로 인하여 타인 또는 자신의 산림을 불에 태워 공공을 위협에 빠뜨린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77조(벌칙) ① 제24조를 위반하여 산사태취약지역에서 사방시설을 훼손하거나 사방시설을

설치·관리하는 것을 거부 또는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5조제3항에 따른 안전조치 명령을 위반한 자
2. 제38조제4항을 위반하여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안전조치를 방해한 자

제78조(벌칙) ①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이동 제한이나 사용 금지 명령을 위반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3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2. 제45조제3항을 위반하여 설계하거나 감리한 자

「산지관리법」

제53조(벌칙) 보전산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보전산지 외의 산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併科)할 수 있다.

1. 제14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산지전용을 한 자
2. 제15조의2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일시사용을 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아 산지일시사용을 한 자
- 2의2. 제16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의 목적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허가·승인 등의 행정처분이 필요한 경우 그 행정처분을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한 자
3. 제25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토석채취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석채취를 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토석채취허가를 받아 토석채취를 한 자
4. 제28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연석을 채취한 자
5. 제35조제1항에 따라 매입하거나 무상양여받지 아니하고 국유림의 산지에서 토석채취를 한 자

제54조(벌칙) 보전산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보전산지 외의 산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4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허가를 받아 산지전용을 한 자
2. 제15조의2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일시사용을 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허가를 받아 산지일시사용을 한 자
3. 제19조제2항제1호 후단을 위반하여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내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하거나 산지일시사용을 한 자
- 3의2. 제20조제2항에 따른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 중지명령을 위반한 자

4. 제25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석채취를 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허가를 받아 토석채취를 한 자
 5. 제25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사용인과 고용인을 포함한다) 중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토석 외의 토석을 반입한 자
 6. 제30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사용인과 고용인을 포함한다) 중 신고를 한 토석 외의 토석을 반입한 자
 7. 제31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 또는 채석의 중지명령을 위반한 자
 8. 제31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 또는 채석의 중지명령 기간 동안 토석을 반입한 자
- 제55조(벌칙)** 보전산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보전산지 외의 산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5조제1항 전단에 따라 산지전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산지전용신고를 하고 산지전용한 자
 2. 제15조의2제4항 전단에 따라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산지일시사용을 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고 산지일시사용을 한 자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8조의2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산지전용타당성조사를 한 자 또는 그 조사결과를 허위로 통보하거나 변조하여 제출한 자
 4.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된 토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
 5. 제25조제2항 전단을 위반하여 토사채취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토사를 채취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토사채취신고를 하고 토사채취를 한 자
 6. 제30조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채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채석단지에서 채석을 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채석신고를 하고 채석단지 안에서 채석을 한 자
 7. 제37조제7항 각 호에 따른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8. 제39조제4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이 포함된 토석 또는 폐기물로 산지를 복구한 자
 9. 제40조의2제1항(제44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2항을 위반하여 감리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감리한 자
 10. 제44조제1항에 따른 시설물의 철거명령이나 형질변경한 산지의 복구명령을 위반한 자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제2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석재채취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석재채취업을 영위한 자
 2. 제9조제5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명칭을 사용하여 석재채취업등을 경영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을 빌려준 자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4조제1항에 따른 우수사업자 인증을 받은 자
 4. 제14조제4항을 위반하여 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5.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제20조를 위반하여 거짓 표시 등을 한 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7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의3제3항을 위반한 부실 설계·감리로 재선충병의 피해 확산 원인을 제공한 자
2. 제8조의4제2항을 위반한 부실 시공·사업으로 재선충병의 피해 확산 원인을 제공한 자
3.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반출금지구역에서 소나무류를 이동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7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회피한 자
2. 제8조제1항에 따른 방제조치 명령을 위반한 자
3. 제10조제3항 전단을 위반하여 감염목등을 판매·이용하거나 감염목등을 보유·발견하고 신고하지 아니한 자

③ 제10조의2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벌칙) 제6조의2제6항(제18조의2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항 각 호의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조 제5호 다목 및 라목 관련

다.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특별관리임산물에 관한 범죄

제32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8조의4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특별관리임산물을 유통·판매 또는 통관한 자
2. 제18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고의로 잘못하였거나 품질검사 결과를 거짓으로 통보한 자
3. 제18조의5제2항에 따른 폐기 또는 반송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게을리 한 자
4. 제18조의6제2항에 따른 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특별관리임산물을 유통·판매 또는 통관하였거나 거짓으로 품질표시를 한 자

②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지은 자와 제18조의7제3항을 위반하여 표시 또는 광고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가 수리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특별관리임산물을 생산한 자

라.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산림기술자 및 산림기술용역업·산림사업시행업에 관한 범죄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1조를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산림기술용역업 또는 산림사업시행업을 수행하게 하거나 자신의 산림기술자 자격증을 빌려준 자

나.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의 산림기술자 자격증을 빌려 산림기술용역업 또는 산림사업시행업을 수행한 자

다. 가목 및 나목의 행위를 알선한 자

라. 산림기술용역업 등 산림기술자 자격이 필요한 두 개 이상의 업체에 중복하여 취업한 자

2. 제15조제1항에 따른 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산림기술용역업을 수행한 자

3. 제15조제5항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성명을 사용하여 산림기술용역업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빌려준 자

4. 제15조제6항을 위반하여 제3호의 행위를 알선하거나 타인의 등록증을 사용한 자

② 제17조제2항을 위반하여 설계 또는 감리를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7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종묘생산업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종묘생산을 한 자

2. 제23조의2제4항에 따른 국유림영림단의 등록 또는 제24조제1항에 따른 산림사업법인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산림사업을 한 자

3. 제23조의2제4항 후단을 위반하여 국유림영림단의 등록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준 자

4. 제24조제4항을 위반하여 산림사업법인의 등록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준 자

7. 제40조제1항에 따른 임산물의 유통, 생산 또는 사용의 제한을 위반한 자

8. 제42조의14제2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자생식물 종자를 공급하거나 생산한 자

9.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2조의14제2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자

10. 제42조의14제4항을 위반하여 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11. 제67조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품질이 불량한 산림용 종자와 산림용 묘목을 출하하거나 소독·폐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참고자료 2] 특별사법경찰제도 개관

- 현행법상 사법경찰은 크게 ① 검찰청·경찰청·해양경찰청에 소속되어 범죄에 대한 일반적 수사권을 행사하는 일반사법경찰과 ② 그 밖의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등에 소속되어 특정한 영역의 범죄에 대하여만 수사권을 행사하는 특별사법경찰 두 종류로 구분되고 있음.
- 특별사법경찰은 ① 전문적인 업무 영역에 종사하는 행정공무원 등에게 관련된 분야의 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부여함으로써 전문지식을 범죄 수사에 활용할 수 있고, ② 시·공간적인 제약으로 일반사법경찰의 접근이 어려운 경우 범죄 현장 접근성이 높은 자에게 수사권을 부여하여 신속한 범죄 수사를 도모할 수 있는 등의 취지에서 1956년 도입되었고, 도입 이후 지속적으로 그 범위가 확대되어 2025. 12. 31. 기준 중앙행정기관에서 지명된 특별사법경찰이 15,199명,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명된 특별사법경찰이 6,064명에 이르고 있음.